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항
의 결 연 월 일	2021. . . (제 회)	

재 산 세 도 시 지 역 분 부 과 대 상 지 역 고 시 안

제 출 자	고 령 군 수 (재무과장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21. 6. .

제 출 자 : 고령군수

1. 제안이유

지방세법 제1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할 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함으로써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근거를 마련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의해 도시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결정하고자 함

- 부과대상 : 건축물, 토지, 주택, 개발제한구역안의 고급주택, 별장
- 제외대상 : 전, 답, 과수원, 목장용지, 관리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 보전지역, 개발제한구역안의 일반주택

나.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: 32,473,748m²

구 분	대상 도시지역(m ²)					
	계	주거지역	상업지역	공업지역	녹지지역	미지정
대가야읍 성산면 다산면 개진면	32,473,748	2,933,145	143,886	3,481,163	25,802,895	112,659

3. 관계법령 : 붙임

- 「지방세법」 제112조(재산세 도시지역분)
- 「지방세법시행령」 제111조(토지 등의 범위)

□ 「지방세법」

제112조(재산세 도시지역분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(이하 이 조에서 "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"이라 한다)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, 건축물 또는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토지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. <개정 2010.12.27., 2013.1.1.>
1.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
 2.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.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.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-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, 골프장, 유원지,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. <개정 2010.12.27., 2013.1.1.>

□ 「지방세법시행령」

제111조(토지 등의 범위) 법 제1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, 건축물 또는 주택"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0.12.30.>

1. 토지: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전·답·과수원·목장용지·임야를 제외한 토지와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로서 환지처분의 공고가 된 모든 토지(혼용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 중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)
2. 건축물: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
3. 주택: 법 제9장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. 다만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3조제5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별장 또는 고급주택만 해당한다.

참고**읍면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**

구 분	대상 도시지역(km ²)					
	계	주거지역	상업지역	공업지역	녹지지역	미지정
합 계	32,474	2,933	144	3,481	25,803	113
대가야읍	7,376	1,475	144	225	5,532	-
성 산 면	860	-	-	554	193	113
다 산 면	23,869	1,458	-	2,333	20,078	-
개 진 면	369	-	-	369	-	-